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가맹본부의 로고] [정보공개서등록번호:2012010056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2.10.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2.09.19]



[인 터 넷 주 소  
www.loginfvc.com]  
대표 이메일 주소  
- ]

[로그인편의점]

## 정 보 공 개 서

[유한회사 애플디아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유한회사 애플디아이]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13층(서초동,서희타워)]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3416-661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3416-675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팀02-3416-6612]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유한회사<br>애플다아이 | 로그인편의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13층(서초동,서희타워)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13.06.21 | 2013.06.21                          | 최준식     | 02-3416-6612 | 02-3416-6752 |
|               | 법인등록번호     | 110114-02302328                     | 사업자등록번호 | 264-81-17803 |              |

###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대표자<br>(이사) | 최준식     | 로그인<br>편의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13층(서초동,서희타워)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최준식                                 | 02-3416-6612 | 02-3416-6752 |
| 사용인<br>(감사) | 배국상     | 로그인<br>편의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13층(서초동,서희타워)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최준식                                 | 02-3416-6612 | 02-3416-6752 |
| 계열회사        | 해 당 없 음 |            |                                     |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로그인편의점]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로그인편의점                                                                            |                                                             |
| 상 호       | 로그인편의점 0 0 점                                                                      |                                                             |
| 서비스표      |  | 출원 번호 :<br>제41-2012-0029760호<br>등록번호 :<br>제41-0272364-0000호 |
| 광 고       |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17,122,024 | 8,519,629 | 8,602,395 | 1,393,852 | 51,765  | -421,062 |
| 2022년 | 12,238,817 | 7,107,079 | 5,131,737 | 1,522,722 | 108,629 | 477,079  |
| 2023년 | 13,433,959 | 6,860,161 | 6,579,798 | 1,403,136 | 71,538  | 75,483   |

[별첨 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br>임원 | 최준식 | 이사   | 2018.11.01.~현재  | (유) 애플디아이 이사          | 회사 총괄    |
|                  |     |      | 2020.12.02.~현재  | 유한책임회사 애플이엔씨<br>업무집행자 |          |
|                  |     |      | 2017.03.30.~현재  | (유)한일자산관리엔투자<br>이사    |          |
|                  | 배국상 | 감사   | 2018.11.01.~ 현재 | 감 사                   | 회사 내부 감사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1      | 1   | 2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 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출원 및<br>등록일자     | 출원 및 등록번호                       | 소유자                             | 등록만료일      |
|-------------------|---------------------|------------------|---------------------------------|---------------------------------|------------|
| 로그인편의점<br>(서비스표권) | 제품,<br>영업표지사용<br>대가 | 2012.09.03<br>출원 | 출원번호 :제<br>41-2012-0029760<br>호 | 주식회사<br>애플디아이<br>(유한회사<br>변경예정) | 2023.11.04 |
|                   |                     | 2013.11.04<br>등록 | 등록번호 :<br>제41-0272364-000<br>0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로그인편의점]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2년 09월

2. [로그인편의점]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지로시스템    | 로그인<br>편의점 | 김준호     | 2012.09.~2015.09.02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8길<br>30-9, 205(구로동, 명지빌딩) |
| (주)애플다아이 |            | 최준식     | 2015.09.03~ 2018.10.31.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br>2583, 13층(서초동,서희타워)  |
| (유)애플다아이 |            |         | 2018.11.01.~현재          |                                       |

3. [로그인편의점]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로그인편의점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편의점 | 식·음료, 잡화, 기타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로그인편의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 수 | 직영점 수 | 전체          | 가맹점 수 | 직영점 수 | 전체          | 가맹점 수 | 직영점 수 |
| 전체 | 56          | 54    | 2     | 49          | 47    | 2     | 37          | 35    | 2     |
| 서울 | 16          | 14    | 2     | 11          | 9     | 2     | 7           | 5     | 2     |
| 부산 | 1           | 1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1           | 1     | -     | 1           | 1     | -     | 1           | 1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1           | 1     | -     | 1           | 1     | -     | 1           | 1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17          | 17    | -     | 14          | 14    | -     | 15          | 15    | -     |
| 강원 | 4           | 4     | -     | 2           | 2     | -     | 1           | 1     | -     |
| 충북 | 6           | 6     | -     | 7           | 7     | -     | 5           | 5     | -     |
| 충남 | 2           | 2     | -     | 4           | 4     | -     | 2           | 2     | -     |
| 전북 | 1           | 1     | -     | 1           | 1     | -     | -           | -     | -     |
| 전남 | 2           | 2     | -     | 3           | 3     | -     | 2           | 2     | -     |
| 경북 | 3           | 3     | -     | 3           | 3     | -     | 2           | 2     | -     |
| 경남 | 2           | 2     | -     | 2           | 2     | -     | 1           | 1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로그인편의점]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년 | 72 | 14    | 23    | 9     | 1     | 54 |
| 2022년 | 54 | 8     | -     | 15    | -     | 47 |
| 2023년 | 46 | 10    | 7     | 14    | 1     | 35 |

## 6. [로그인편의점]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없음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지역 | 2023년<br>말<br>가맹점<br>수 | 2023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매출액          | 면적<br>3.3㎡당 | 상한        | 면적<br>3.3㎡당 | 하한      | 면적<br>3.3㎡당 |        |
| 전체 | 35                     | 292,777      | 13,972      | 1,976,100 | 59,827      | 22,894  | 1,511       | 15곳 산정 |
| 서울 | 5                      | 227,355      | 37,514      | 227,355   | 37,514      | 227,355 | 37,514      | 1곳 산정  |
| 부산 | -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대구 | -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인천 | 1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광주 | -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대전 | -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울산 | 1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세종 | -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경기 | 15                     | 213,156      | 11,340      | 428,090   | 29,672      | 76,112  | 4,540       | 7곳 산정  |
| 강원 | 1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충북 | 5                      | 144,298      | 6,803       | 347,249   | 11,459      | 22,894  | 1,511       | 3곳 산정  |
| 충남 | 2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전북 | -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전남 | 2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경북 | 2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경남 | 1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제주 | -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테이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일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및 매출액 파악이 안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

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35 개가 아닌 실제 15 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로그인편의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로그인편의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35         | 1,426일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단위: 천원)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 비공개 | -             | -    | -   |    |
| 광고 | 소계  | 비공개 | -             | -    | -   |    |
|    | 비공개 |     | -             | -    | -   |    |
|    | 비공개 |     | -             | -    | -   |    |
|    | 비공개 |     | -             | -    | -   |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우리은행    | 강남교보타워금융센터<br>지점 | 서울시 서초구<br>강남대로 465 | 02-3481-5041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보험인(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                                                              |      |
| 보험계약자             | 유한회사 애플디아이                                                             | 가맹본부 |
|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 가맹점사업자                                                                 |      |
| 보험기간              |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
| 보험금액              | 예치금액                                                                   |      |
| 보장범위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
| 지급조건              |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
| 보험금의 수령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br>→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br>→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로그인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비고 |
|--------------------|---------|--------------|----|
| 총계                 | [3,300] |              |    |
| 영업표지사용권<br>대가(가맹비) | 2,200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
| 교육비                | 1,100   |              |    |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해지 시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계  | [10,000] |                |                                    |    |
| 보증금 | 10,000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상품대금 미결제 등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3,3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13,300]           |
|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가맹비) | 2,200              |
| 교육비              | 1,100              |
| 계약이행보증금          | 10,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49.587평방미터 기준)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br>33㎡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 [39,600~77,000] | [2,640~5,133] |             |            |                                        |
| 필수설비(정착물) | 워크인쿨러, 오픈쇼케이스, 콘도라운수기 등 | 13,200~22,000   | 880~1,467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설치 전 계약 취소 | 철거비, 소방시설, 화장실공사, 외부테라스공사, 주방가스배관시설 제외 |

|      |          |      |                   |               |                                |                  |                                                                         |
|------|----------|------|-------------------|---------------|--------------------------------|------------------|-------------------------------------------------------------------------|
|      |          |      |                   |               |                                |                  |                                                                         |
| 인테리어 | 실내장식     | 협력업체 | 13,200~<br>27,500 | 880~<br>1,833 | 인테리어<br>업체와<br>별도<br>계약에<br>의함 | 공사 전<br>계약<br>취소 | 귀하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경우, 도면설계 및 감리비 조로 총공사비의 10%(부가세포함)를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간판 및 시트지 |      | 2,200~<br>5,500   | -             |                                |                  |                                                                         |
| 초도물품 |          | 협력업체 | 11,000~<br>22,000 | -             | 업체와의<br>계약에<br>의함              | 물품미공<br>급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시세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당사가 상권분석과 관련하여 입지 선정 조인→가맹희망자 입지 선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 의사 결정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br>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br>만19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로그인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가맹금 분할 납부 :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                |                                  |      |             |                                                  |
| 월 회비                  | 당 사             | 330/월              | 익월5일                             | -    | 소멸성 비용      |                                                  |
| 광고 분담금                | -               | -                  | -                                | -    |             |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
| 교육훈련비                 | 당 사             | 100/1인당            | 교육 2일전                           | 미 실시 | 소멸성 비용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협력업체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 -           | 29페이지 참조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 협의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      |             |                                                  |
| 지연이자                  | 당 사             | 연18%               | 지 급 기 일 의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 원·부재료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경과 시 부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력업체            | 3,300~5,500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 2)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3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미포함)

| 구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0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0.00% |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                |                    |             |          |
| 추가 교육비 | 협의하여 결정 | 교육 시작 7일 이전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소멸성 비용      | 추가교육 필요시 |
| 점포 이전비 | 협의하여 분담 |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 -           | 점포이전 합의시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로그인편의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귀하는 “로그인편의점”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구)로그인편의점” 또는 “(전)로그인편의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당사가 철거 및 삭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②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10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 합니다.
- ③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 100,000원의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④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⑥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15일 이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로그인편의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여 공급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에 해당되어, 작성을 생략합니다.]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로그인편의점]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로그인편의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비고 |
|--------------|--------------------------|-----------------------|----|
| 식·음료, 잡화, 기타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상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 계약 해지 |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여 공급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 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식·음료, 잡화, 기타 | -           | 서면, 인터넷 통보 |    |

#### 4.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편의점을<br>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로그인편의점      | 해당없음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반경 150m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합니다. | 계약서 명시 또는<br>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br>(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150m 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br>(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로그인편의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br>(가맹점 총<br>매출액) | 기타 오프라인<br>(직영점 총<br>매출액)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85.6%                 | 14.4%                     | 0.0%          | 0.0%   |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br>(가맹점 전용판매)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0.0%                       | 0.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로그인편의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월회비 등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6조 제2항 제1호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 제2항 제2호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제6조 제2항 제3호<br>가목 |

|                                                                                                  |                   |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6조 제2항 제3호<br>나목 |
| ○ [로그인편의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6조 제2항 제3호<br>다목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6조 제2항 제3호<br>라목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약정해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유예기간 없이 해지하는 즉시해지, 중도해지 3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약정해지 사유

##### < 귀하가 당사에 대해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로그인편의점』 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대해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1회 이상 당사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 약정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1. 귀하가 당사의 개점 준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 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제31조 제1항 제1호 |
| 2.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의 연체, 월회비 2회 연체, 기타 채무불이행의 경우                              | 제31조 제1항 제2호 |
| 3. 당사의 경영지도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 제31조 제1항 제3호 |
| 4.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제31조 제1항 제4호 |
| 5.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31조 제1항 제5호 |
| 6.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 제31조 제1항 제6호 |
| 7.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제31조 제1항 제7호 |
| 8.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 제31조 제1항 제8호 |

|                                                                    |               |
|--------------------------------------------------------------------|---------------|
|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               |
| 9.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 처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제31조 제1항 제9호  |
| 10. 귀하가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일체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제31조 제1항 10호  |
| 11. 귀하가 제23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상품]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31조 제1항 제11호 |
| 12.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1조 제1항 제1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2) 즉시해지 사유

### < 귀하가 당사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1. 당사가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당사가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단, 영업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당사가 귀하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제32조 제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  |
|-------------------------------------------------------------------------------------------------------------------------------------------------------------------------------------------------------------|--|
|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 ○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
|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서 제32조 제1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중도해지

① 당사와 귀하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1. 본 가맹 계약 후, 1년 미경과 계약 해지 시 : 24개월 치의 월 회비
2. 본 가맹 계약 후, 1년 이상 2년 미경과 계약 해지 시 : 12개월 치의 월 회비
3. 본 가맹 계약 후, 2년 이상 2년 6개월 미경과 계약 해지 시 : 6개월 치의 월회비
4. 본 가맹 계약 후, 2년 6개월 이상 3년 미경과 계약 해지 시 : 남은 기간 월회비의 50%

②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 중도에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귀

하는 당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약금을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1. 본 가맹 계약 후, 1년 미경과 계약 해지 시 : 24개월 치의 월 회비
2. 본 가맹 계약 후, 1년 이상 2년 미경과 계약 해지 시 : 12개월 치의 월 회비
3. 본 가맹 계약 후, 2년 이상 2년 6개월 미경과 계약 해지 시 : 6개월 치의 월회비
4. 본 가맹 계약 후, 2년 6개월 이상 3년 미경과 계약 해지 시 : 남은 기간 월회비의 50%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 합의를 한 후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                                                                   |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 제39조 제1호                                                               |
|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  | 제39조 제2호                                                               |
| 재조정 절차                                                                     |  | 동의 절차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수정사유에 따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br>○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br>가맹사업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

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입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 통지 시 | 모든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로그인편의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 편의점 관련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가맹사업팀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로그인편의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07:00~익일01:00 (점포 여건 및 유사업종의 영업시간, 고객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본 계약 체결 시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주 6일 이상 월26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 공휴일로 인해 연속적인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문의: 가맹사업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해당 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전체행사로서의 [로그인편의점] 브랜드 이미지 제고(상품광고) 또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광고의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절차                                 |
|----|---------|------|-------|--------------------------------------|
| 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 100% | -     | -                                    |
|    | 개별광고    | -    | 100%  |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br>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    |                          |                            |                                                                 |                                                                        |                                                                                                                     |
|----|--------------------------|----------------------------|-----------------------------------------------------------------|------------------------------------------------------------------------|---------------------------------------------------------------------------------------------------------------------|
|    |                          |                            |                                                                 |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
| 판촉 | 전국<br>및<br>지역<br>별<br>광고 | 브랜드광고                      | 가맹사업법<br>제12조의6제1항에 따른<br>사전약정서 체결 또는<br>동의절차 시 행사별로<br>분담비율 안내 |                                                                        | <광고><br>광고 실시 전 계획안<br>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br>가맹점의 행사 참여                                                           |
|    |                          | 브랜드<br>광고<br>+ 가맹점<br>모집광고 |                                                                 |                                                                        | <판촉><br>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br>(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br>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br>(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br>동의를 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
|    | 전국 및 지역별판촉               |                            |                                                                 |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br>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br>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br>있습니다. |                                                                                                                     |
|    | 개별판촉                     |                            | -                                                               | 100%                                                                   |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br>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br>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위약금조로 각 금 1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 ③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가맹계약서 제3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서 제34조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1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47일 내외      | [8P~9P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 사업 설명 · 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br>-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D-46        |           |
| 점포개발 및<br>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 가맹금 예치            | - [우리은행] 가맹금 예치,<br>또는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 체결                   | D-29(1일)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 인테리어 등공사          |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 D-24~5(20일) |           |
| 초도물품              | - 최초 상품 공급(자율구매)                                        | D-7~4(3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 | 방법      | 비고                      |
|-----|---------|-------------------------|
| 1   | 전문가의 자문 |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

|   |         |                                                              |
|---|---------|--------------------------------------------------------------|
| 2 | 가맹본부 제출 |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3 | 가맹계약 체결 |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br>사유                                        | 가맹본부 부담<br>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br>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
| ○점포의 시설<br>장비, 인테리어<br>등의 노후화가 객관적<br>으로 인정되는<br>경우 | ○간판교체 비용<br>○인테리어 공사 비<br>용(장비·잡기의 교<br>체비용을 제외<br>한 실내건축공<br>사에 소요되는 일체<br>의비용 단, 가<br>맹사업의 통일성과<br>무관하게 가맹점<br>사업자가 추가<br>공사를 실시함에<br>따라 소요되는 비<br>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br>는 이전을 수반<br>하지 않는 점포<br>환경개선 : 20%<br><br>○점포의 확장 또<br>는 이전을 수반<br>하는 점포환경<br>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br>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br>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br>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br>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br>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br>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br>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br>○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br>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br>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br>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br>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br>본부 부담액을 지급<br><분할지급 시 절차><br>○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br>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br>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br>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br>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br>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br>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br>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br>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br>40%) | ○점포환경<br>개선일로<br>부터 3년<br>이내에 가<br>맹본부의<br>책임없는<br>사유로 계<br>약이 종료<br>(계약의 해<br>지·영업양<br>도 포함되<br>는 경우<br>가맹본부<br>부담액 중<br>잔여기간<br>에 비례하<br>는 부담액<br>은 지급하<br>지 아니하<br>거나 이미<br>지급한 경<br>우 에 는<br>환수 가<br>능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br>필요 시<br>진행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br>(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br>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br>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br>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br>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br>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br>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br>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br>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br>부담                                               | 문의:<br>가맹사업팀 |
| 가맹점사업자<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br>→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br>(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br>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br>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br>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br>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br>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br>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br>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br>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br>부담<br>(가맹금에 포함된<br>통상의 경영지도<br>비용을 초과한<br>부분에 한함) | 문의:<br>가맹사업팀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로그인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로그인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br>부가세 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7시간  | 1,100(가맹금내 포함)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정기)<br>교육 | 5시간  | 100/1인당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점 개점 전까지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의 2023년 말 기준 다음과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서울 | 로그인 서희타워점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1층 |
| 2  | 서울 | 로그인 송실대점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B1층 로그인편의점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약 8년 4개월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br>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392,700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회계장부 및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3416-661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는 **가맹유통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loginfc.com](http://www.loginfc.com)]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2021~202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2022, 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           |
|--------------------------------------------------------------------------------------------------------------------------------------------------------------------------------------------------------------------------------------------------------|-----------|-----------|
| 가맹금예치신청서                                                                                                                                                                                                                                               |           |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가맹점)명  |           |
|                                                                                                                                                                                                                                                        | 성명(대표자)   |           |
|                                                                                                                                                                                                                                                        | 주소(사무소)   | (전화: )    |
| 가맹<br>본부                                                                                                                                                                                                                                               | 상호명(영업표지) |           |
|                                                                                                                                                                                                                                                        | 성명(대표자)   |           |
|                                                                                                                                                                                                                                                        | 주소(사무소)   | (전화: )    |
| 예치가맹금                                                                                                                                                                                                                                                  |           | ₩ (금 원 정) |
| 신청인의 계좌                                                                                                                                                                                                                                                |           |           |
| 가맹본부의 계좌                                                                                                                                                                                                                                               |           |           |
|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예치기관의 장<br/>귀하<br/>지점장</p>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